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94375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인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한규욱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각 본점, 지점, 판매점, 대리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그 완제품의 구조



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은 202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 10. 3.부터,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 모두 2026. 3. 24.부터 각 2026. 5. 21.까지 연 5%, 202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는,
 - 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의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각 본점, 지점, 판매점, 대리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그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각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쓰레기 수거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들(이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쓰레기처리 시스템 및 물류자동화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D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건축물의 내부에 수직으로 수집 관로가 배치되고 이 수집 관로에서 각 층의 소정 위치까지 분기 관로가 연장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분기 관로에 장착 고정되는 슈트 프레임에는 도어가 개폐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고, 상기 도어는 컨트롤박스에 의해 개폐 제어되도록 한 구성의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복귀 스프링으로 탄성 지지되어 상기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 시키는 래치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컨트롤박스의 신호로 여자되어 상기 래치를 후진 이동시키는 솔레노이드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도어 폐쇄 위치에서 상기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를 더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5】 각 생략

라) 발명의 주요 설명 및 도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4> 본 발명의 목적은 고장 발생이 없고 제조하기 쉬운 간단한 구조이면서도 전체 수집 관로의 상황에 맞춰 개폐 제어될 수 있고, 설비 수공이 간결한 구조로 된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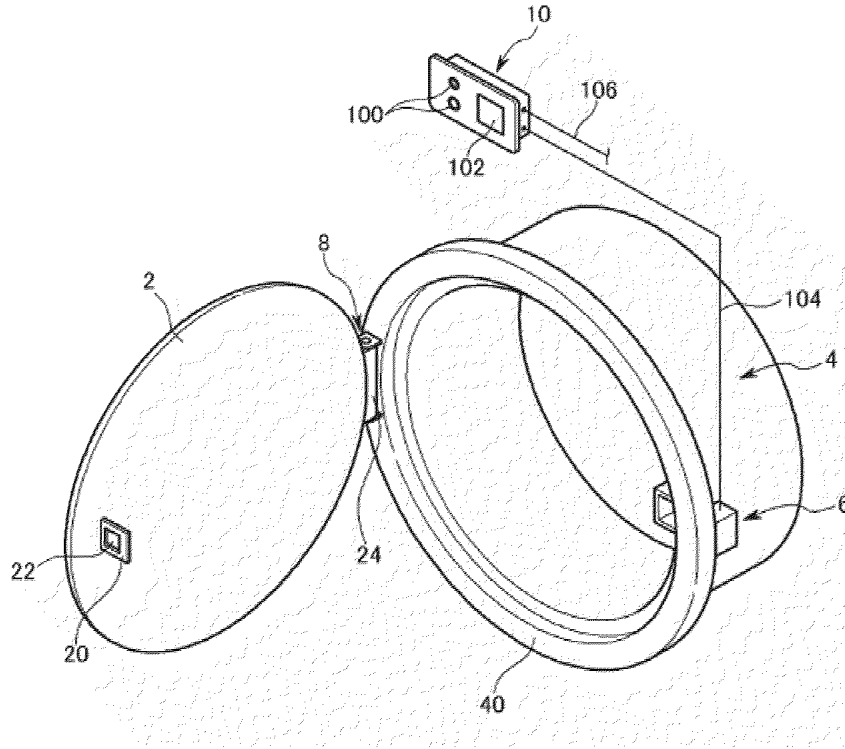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5>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는 본 발명은 건축물의 내부에 수직으로 수집 관로가 배치되고 이 수집 관로에서 각 층의 소정 위치까지 분기 관로가 연장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분기 관로에 장착 고정되는 슈트 프레임에는 도어가 개폐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고, 상기 도어는 컨트롤박스에 의해 개폐 제어되도록 한 구성의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복귀 스프링에 의해 탄성 지지된 래치로 상기 도어의 걸쇠가 상시 록킹 되도록 하고, 또한 상기 래치는 컨트롤박스의 신호로 작동되는 솔레노이드에 의해 후진 방향으로 여자 흡인되게 함으로써 상기 걸쇠를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어 폐쇄 위치에서 상기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를 더 갖춘 구성으로 된다.

<26> 또, 상기 센서는 마이크로 스위치, 리드 스위치, 근접 스위치, 포토 커플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본 발명의 투입구 도어 장치는, 도 1로 나타낸 바와 같이, 도어(2), 슈트 프레임(4), 래치 박스(6)로 이루어지고, 상기 도어(2)는 비틀림 축 수단(8)을 개재하여 슈트 프레임(4)으로 연결됨에 따라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보전되는 상폐형(常閉形)으로 배치된다.

[도1] 본 발명에 관련된 투입구 도어의 구성을 나타내는 외관 사시도



2: 도어, 4: 슈트 프레임, 6: 래치 박스, 8: 비틀림 축 수단, 10: 컨트롤박스, 20: 걸쇠, 22: 록킹 공, 24: 힌지부, 40: 패킹, 100: 램프, 102: 인식수단, 104, 106: 데이터 라인

<32> 또, 래치 박스(6)는 상기 도어(2)의 내측 면에 일체로 장착된 걸쇠(20)와 대응하는 위치로 설치되고, 이것은 적당한 장소에 마련되는 컨트롤러(10)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어되는 것이다.

<33> 상기 슈트 프레임(4)은 적어도 건물 각층마다 1개소 이상 비치되는 것이며, 상기 도어(2)가 닫는 면에는 기밀 보전용 패킹(40)을 구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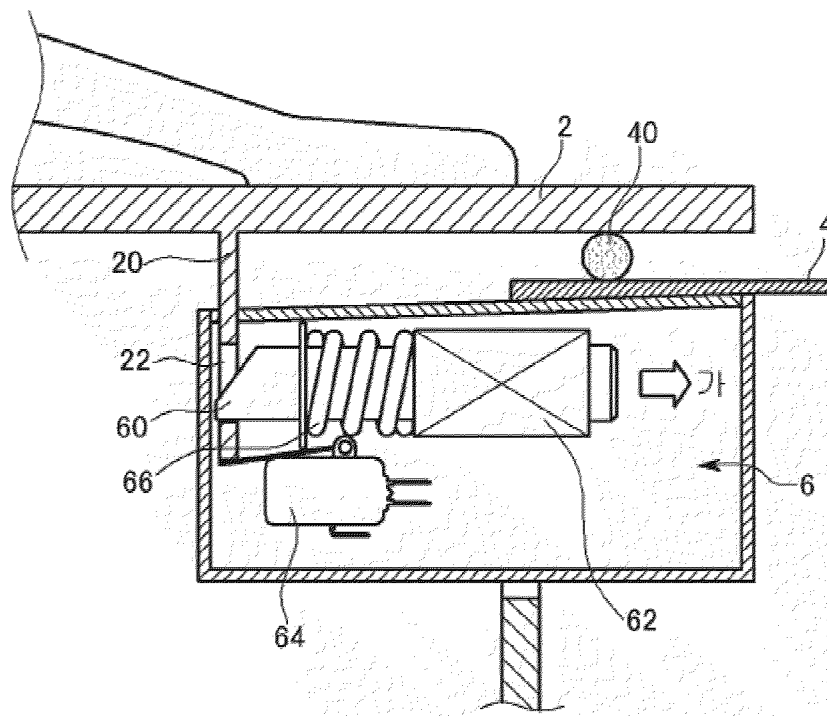
<34> 상기 컨트롤러(10)는 층별로 설치된 슈트 프레임(4) 중에서 도어(2)가 열려져 현재 사용 중인 것이 없는지의 여부를 램프(100)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한쪽에는 인증수단(102)이 마련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35> 본 발명에서 인증수단(102)으로는 바코드, 스마트카드, ID카드, RFID카드, 지문 감식, 자기 기록카드, 암호입력 등이 적용될 수 있다.

<36> 래치 박스(6)의 내부에는 도 2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어(2)의 걸쇠(20)에 간섭되어 전

후진 연동할 수 있게 배치된 래치(60)와, 이 래치를 여자력으로 흡인 연동시킬 수 있는 솔레노이드(62)와, 상기 걸쇠(20)의 끝 부분을 감지하여 스위칭 온 오프 되는 센서(64)가 배치되어 있다. 상기 래치(60)는 솔레노이드(62)가 통전 여자 되면 화살표 "가" 방향으로 후진 이동하면서 걸쇠(20)를 해방하는 비간섭 위치로 놓이고, 또 여자력이 소멸 되면 전진 위치하여 상기 걸쇠(20)를 록킹 하는 초기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복귀 스프링(66)으로 탄성 지지 되는 구조로 설치된다.

[도2] 본 발명의 주요부 래치박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단면도



2: 도어, 4: 슈트 프레임, 6: 래치 박스, 20: 걸쇠, 22: 록킹 공, 40: 패킹, 60: 래치, 62: 솔레노이드, 64: 센서, 66: 복귀 스프링

<37> 상기 래치(60)는 솔레노이드(62)가 통전 여자 되면 화살표"가"방향으로 후진 이동하면서 걸쇠(20)를 해방하는 비간섭 위치로 놓이고, 또 여자력이 소멸 되면 전진 위치하여 상기 걸쇠(20)를 록킹 하는 초기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복귀 스프링(66)으로 탄성 지지 되는 구조로 설치된다.

<38> 또한, 상기 걸쇠(20)에는 래치(60)가 삽입될 수 있는 록킹 공(22)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술한 래치(60)의 전후진 작동에 따라 록킹-언록킹 되면서 도어(2)를 개폐하게 된다.



<39> 한편, 상기 센서(64)는 도시한 예에서 걸쇠(20)의 끝 부분에 간섭 연동 되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리드 스위치나 근접 스위치와 같이 자력을 감지하여 작동되는 스위치류, 또는 광 감지로 스위칭 온 오프되는 포토 커플러 등을 채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8> 래치박스(6)의 솔레노이드(62)는 컨트롤박스(10)의 제어신호에 따라 래치(60)를 동작시켜 도어(2)가 폐쇄 유지 또는 개방되게 한다.

<59> 래치(60)가 솔레노이드(62)에 의해 후진 이동하면 도어(2)의 걸쇠(20)가 해방되어 개방 상태로 된다.

<60> 사용자가 도어(2)를 당겨 열고 쓰레기를 투기할 때에 센서(64)는 도어(2)의 걸쇠(20)에 의한 간섭에서 벗어나고, 이때 발생하는 신호는 컨트롤박스(10)를 거쳐 통제실, 또는 집하장의 중앙통제장치로 보내져서 도어(2)가 개방상태임을 알리고, 중앙통제장치는 현재 개방된 투입구가 있다는 데이터를 다른 투입구의 컨트롤박스(10)로 출력한다.

<61> 또, 사용자가 열어 놓은 도어(2)는 쓰레기 투기 후에 그대로 방치하여도 비틀림 축 수단(8)의 복귀 작용에 의해 스스로 닫히고, 이에 따라 다시 센서(64)가 작동하여 도어(2)가 폐쇄 상태라는 데이터는 컨트롤박스(10)를 경유하여 통제실, 또는 집하장의 중앙통제장치로 전송 입력되어 초기 상태가 된다.

2)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H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K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통상의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16)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베이스(2)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상판 베이스(2)의 상측으로 배치되는 뚜껑틀(6)과;(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상판 베이스(2)의 하측으로 배치되고 외주에 흡기공(8)이 형성된 흡퍼(10)와;(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흡기공(8)으로 설치되어서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40)와;
(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상기 흡퍼(10)의 바깥 가장자리로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14)와;(이하 '구성요소 2-5'라 한다)

상기 뚜껑틀(6)에 개폐 가능하게 배치되고 상기 장착 홈(16)에 끼워지는 힌지부(18)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32)이 각각 외주 면에 형성되는 뚜껑(4)과;(이하 '구성요소 2-6'이라 한다)

상기 힌지부(18)의 양측으로 연결 고정되는 1쌍의 복좌 축(20)과;(이하 '구성요소 2-7'이라 한다)

상기 복좌 축(20)을 축 지지하는 하우징(26)과;(이하 '구성요소 2-8'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26)의 내부에서 출력단이 상기 복좌 축(20)으로 연결되고 반대쪽 고정단은 하우징(26)에 연결 고정되는 나선형 스프링(28)과;(이하 '구성요소 2-9'라 한다)

상기 상판 베이스(2)의 외주 하측으로 배치되어서 상기 뚜껑(4)이 닫히면 계지홈(32)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시정혹(30)과;(이하 '구성요소 2-10'이라 한다)

상기 뚜껑틀(6)의 상면으로 배치되어서 시정 혹(30)을 연동 해제시키는 해제버튼(34)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
(이하 '구성요소 2-11'이라 한다).

【청구항 2, 3】 각 생략

라) 발명의 설명 중 주요 내용 및 도면

해결하려는 과제



[0007] 공지된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에서 투입구를 개폐하는 뚜껑은 사용자가 손으로 쥐고 들어올려 열거나 내려놓아 닫아지게 한 것이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싱크대 상면을 행주로 훑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행주에 걸려져 열리거나 하므로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다.

[0008] 본 발명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에서 겪게 되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뚜껑이 항상 투입구에 조합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사용자가 뚜껑을 강제로 눌러서 투입구를 막는 것으로 닫히고, 열 때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간편한 조작으로 열리는 구성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를 제공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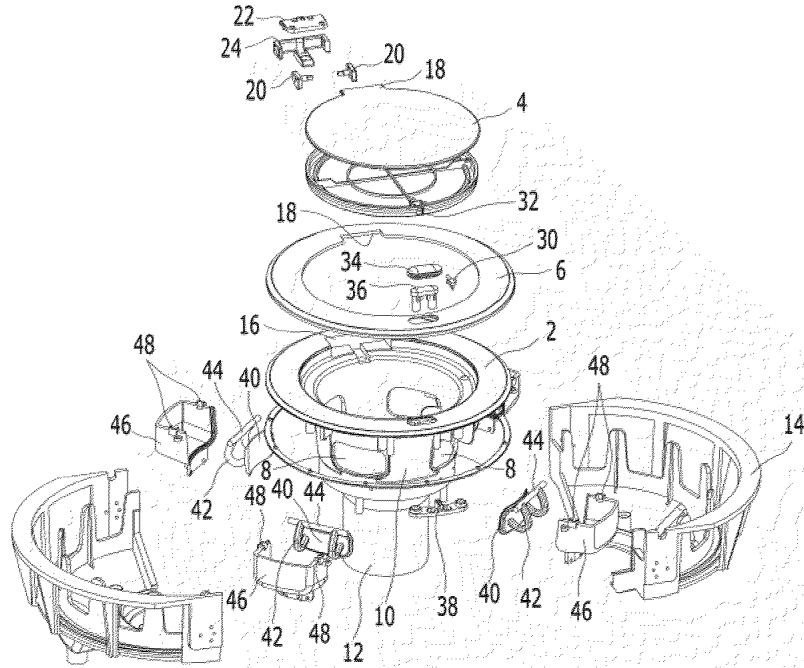
과제의 해결 수단

[0009] 본 발명을 구현하는 투입구는 통상의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을 구비한 상판 베이스의 상측으로 뚜껑틀을 배치하되, 그 안에는 상기 장착 홈에 끼워지는 힌지부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이 외주 면에 마련된 뚜껑을 개폐 가능하게 배치하고, 또한 상기 상판 베이스의 하측은 외주에 흡기공이 형성된 흡퍼로 형성하는 한편, 이 흡퍼의 외주에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를 설치하고 또한 상기 흡기공에는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를 배치함과 아울러 상기 뚜껑의 개폐를 위하여 힌지부의 양측으로 복좌 축을 부착 고정하고, 나선형 스프링의 출력단을 복좌 축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뚜껑이 항상 열리는 방향의 탄력을 받고 있게 하고, 또한 상판 베이스에는 뚜껑의 계지홈으로 끼워지는 시정 축을 배치한 구성으로 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5] 도 1은 본 발명에 관련된 투입구의 세부구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로서, 통상의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는 상판 베이스(2)의 상측에는 여닫이 구조의 뚜껑(4)으로 개폐되는 뚜껑틀(6)이 부착 고정되고, 또 하측은 외주에 흡기공(8)이 형성된 흡퍼(10)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흡퍼(10)의 하단에는 진공수거 시스템으로 접속되는 연장관(12)이 마련되는 한편, 상기 흡퍼(10)의 외주에는 1조 1쌍으로 조립되는 흡음 케이스(14)를 갖춘 구성으로 된다.

[도1] 본 발명에 관련된 투입구의 구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2: 도어, 4: 슈트 프레임, 6: 래치 박스, 8: 비틀림 축 수단, 10: 컨트롤박스, 20: 걸쇠, 22: 록킹 공, 24: 힌지부, 40: 패킹, 100: 램프, 102: 인식수단, 104, 106: 데이터 라인

[0016] 상판 베이스(2)의 내주면 한쪽에는 장착 홈(16)이 형성되어 있고, 이 장착 홈에는 뚜껑(4)의 외주 한쪽으로 돌출 형성된 힌지부(18)가 설치된다.

[0017] 그리고 힌지부(18)의 양측에는 1쌍의 복좌 축(20)이 한쪽 단을 관통하여 일체로 고정된다. 이들 복좌 축(20)은 상방으로 부착되는 고정판(22)에 의해 지지 되고, 상기 고정판(22)은 뚜껑틀(6)의 장착 홈(16)으로 끼워지는 마운팅 프레임(24)에 일체로 조립되는 것으로 배치된다. 또 마운팅 프레임(24)은 장착 홈(16)의 내부에서 그 상방으로 씌워지는 뚜껑틀(6)에 의해 고정된다.

[0018] 상기 힌지부(18)를 지지하는 1쌍의 복좌 축(20)은 하우징(26)으로 축 지지 되어서 도 2로 도시한 바와 같이, 그 내부에 수용된 나선형 스프링(28)의 출력단과 연결된다. 또 상기 나선형 스프링(28)의 고정단은 하우징(26)에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양 복좌 축(20)은 나선형 스프링의 탄성을 받아 회전 복귀할 수 있게 된다.

[0019] 여기서 복좌 축(20)을 지지하는 나선형 스프링(28)의 감김 방향을 뚜껑(4)의 닫힘 방향으로 되게 설정하면, 상기 뚜껑(4)을 닫을 때 나선형 스프링(28)이 감기면서 복귀 에너지



를 비축하게 되고, 이렇게 비축된 에너지는 뚜껑(4)이 자유상태로 놓이면 발동하여 상기 뚜껑(4)을 열게 된다.

[0020] 이러한 구조는 뚜껑(4)의 닫힌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정수단을 요구한다.

[0021] 본 발명의 투입구는 뚜껑(4)의 시정수단으로서, 도 1에 도시한 뚜껑틀(6)의 하측으로 시정 홀(30)을 배치하고, 또한 뚜껑(4)의 외주 대응위치에는 계지홈(32)을 형성하여 놓고 있다.

[0022] 시정 홀(30)은 항상 뚜껑틀(6)의 안쪽으로 돌출하고 있도록 탄압 배치하여 뚜껑(4)이 닫힐 때에 계지홈(32)과 일치하면 그 안으로 끼워져 잠그도록 설치된다.

[0023] 뚜껑틀(6)의 상면에는 시정 홀(30)의 상방으로 해제버튼(34)을 비치하여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뚜껑(4)이 열리도록 하고 있다.

[0025] 상판 베이스(2)의 하측으로 연장 형성되는 흡퍼(10)에서 흡기공(8)의 안쪽에는 체크밸브(40)가 배치된다. 이 체크밸브(40)는 투기한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조로 이송시키고자 뚜껑(4)을 닫은 상태에서 연장관(12)의 하측에 부압이 형성되게 할 때에 흡기공(8)을 통해 외부 공기가 흡인되게 하고, 평상 시에는 흡기공(8)을 폐쇄하여 연장관(12)의 내측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게 하는 구조라면 어떤 형태의 것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

[0027] 또한, 흡퍼(10)의 외부는 버킷(46)을 포함하여 흡음재(도시 생략)로 둘러싸인 다음 상기 흡음 케이스(14)로 마감처리된다.

[0029] 상술한 구성으로 된 본 발명의 투입구는, 뚜껑(4)이 닫힌 상태에서 상판 베이스(2)에 부착된 해제 버튼(34)을 누르면 시정 홀(30)이 연동하면서 뚜껑(4)을 해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복좌 축(20)은 나선형 스프링(28)에 비축된 탄성 에너지의 작용으로 회전되면서 뚜껑(4)을 수직으로 세워 열어 주게 된다.

[0030] 이와 같이 본 발명은 해제 버튼(34)을 누르면 뚜껑(4)이 수직으로 세워져 열리고, 또 수직으로 세워진 뚜껑(4)은 직교방향으로 회동하도록 눌러주는 것으로 달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에 있어서 조작이 매우 간편하다.

다. 피고 제품의 판매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L'라는 명칭의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투입구 도어 장치(이하 '피고 제1 제품'이라 한다)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M'이라는 명칭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 투입구(이하 '피고 제2 제품'이라 하고, 피고 제1,



2 제품을 통칭하여 '피고 각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거나 국내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제1 제품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피고 제2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B가 피고 각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피고 B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각 제품의 생산 등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특허법 제128조¹⁾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000원(=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중 100,000,000원 +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중 900,000,000원)²⁾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각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1)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으로 추가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위 각 청구원인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단순 병합관계에 있다.



그 구성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비침해).

2) 피고 제1 제품은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자유실시기술 항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권리남용 항변).

3)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만 보아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참조).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침해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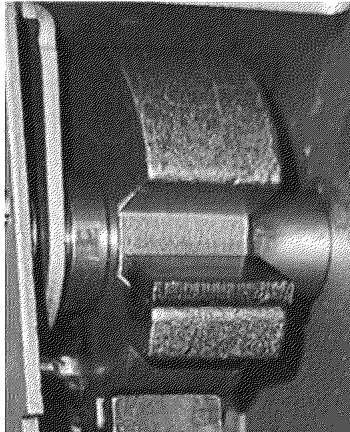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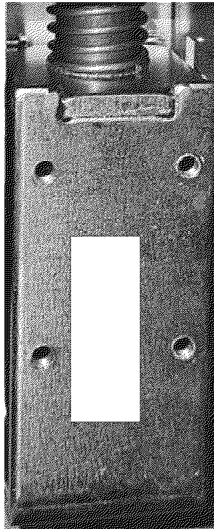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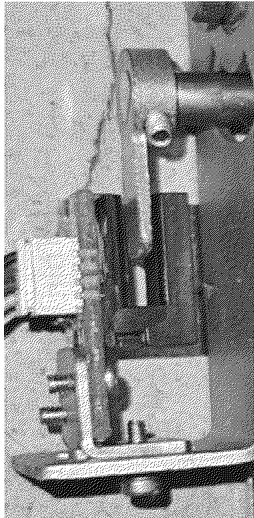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 구성요소의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피고 제1 제품
1-1	건축물의 내부에 수직으로 수집 관로가 배치되고 이 수집 관로에서 각 층의 소정 위치까지 분기 관로가 연장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분기 관로에 장착 고정되는 슈트 프레임에는 도어가 개폐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고, 상기 도어는 컨트롤박스에 의해 개폐 제어되도록 한 구성의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에 수직으로 수집 관로가 배치되고 이 수집 관로에서 각 층의 소정 위치까지 분기 관로가 연장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분기 관로에 장착 고정되는 슈트 프레임에는 도어가 개폐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고, 상기 도어는 컨트롤박스에 의해 개폐 제어되도록 한 구성의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



1-2	<p>복귀 스프링으로 탄성 지지되어 상기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 시키는 래치와,</p>	
1-3	<p>상기 컨트롤박스의 신호로 여자되어 상기 래치를 후진 이동시키는 솔레노이드와,</p>	
1-4	<p>도어 폐쇄 위치에서 상기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를 더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p>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1 부분

이 부분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 제1 제품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1-2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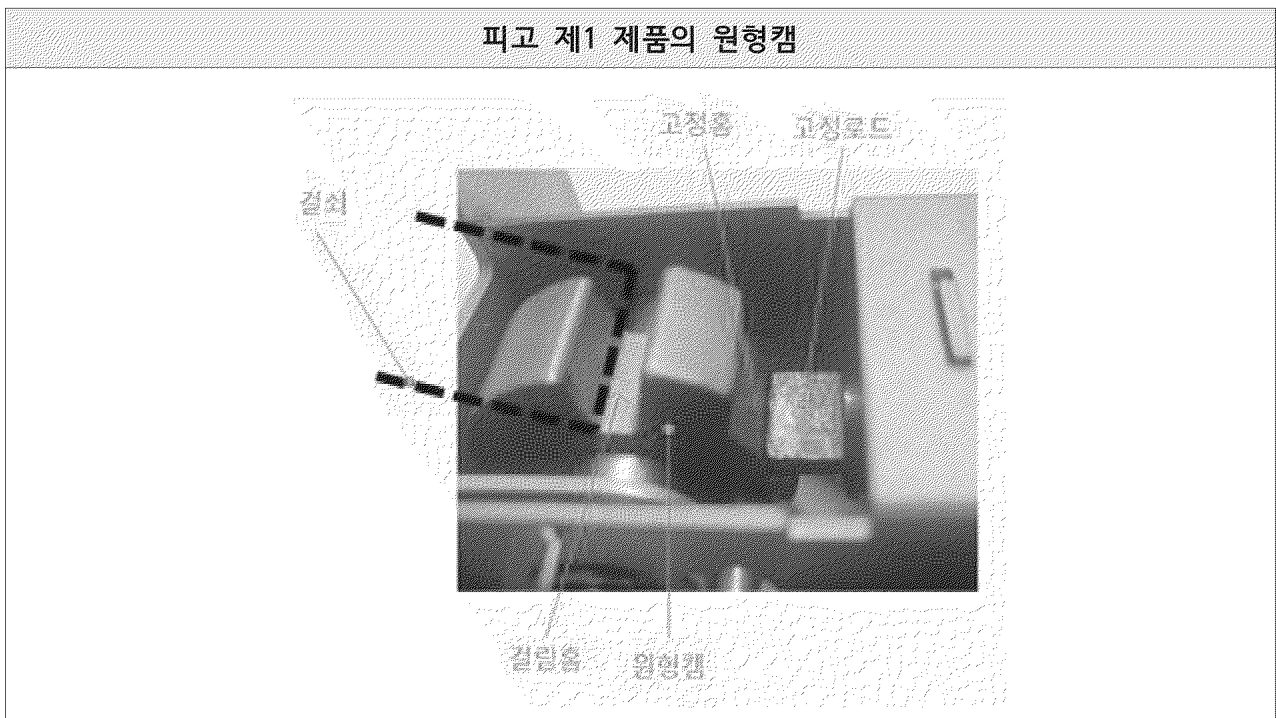
이 부분 구성요소는 "복귀 스프링으로 탄성 지지되어 상기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 시키는 래치"이다. 이는 복귀 스프링에 의하여 탄성 지지되는 래치가 도어의 걸쇠와 맞물려 도어의 폐쇄 상태를 상시 유지하는 구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도 래치, 솔레노이드 및 센서를 별개의 구성요소로 기재하면서, 래치의 기능을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시키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제1 제품은 위와 같은 래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도어가 닫힐 때 걸쇠가 맞물리는 걸림홈과 도어의 닫힌 상태가 유지되도록 신축로드의 단부가 삽입되는 고정홈이 외주면에 형성된 원형캠 및 그 원형캠의 고정홈에 삽입되는 고정로드를 구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구성요소와 피고 제1 제품의 구성요소는 그 형상, 결합관계 및 작동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래치(latch)는 기계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재로서, 상대 부재와 맞물림으로써 잠금 상태를 형성하고, 외력 또는 구동력에 의하여 그 맞물림이 해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반면, 원고가 특정한 피고 제1 제품의 대응구성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동하면서 그 외주면의 형상, 홈 또는 돌출부를 통하여 다른 부재의 위치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회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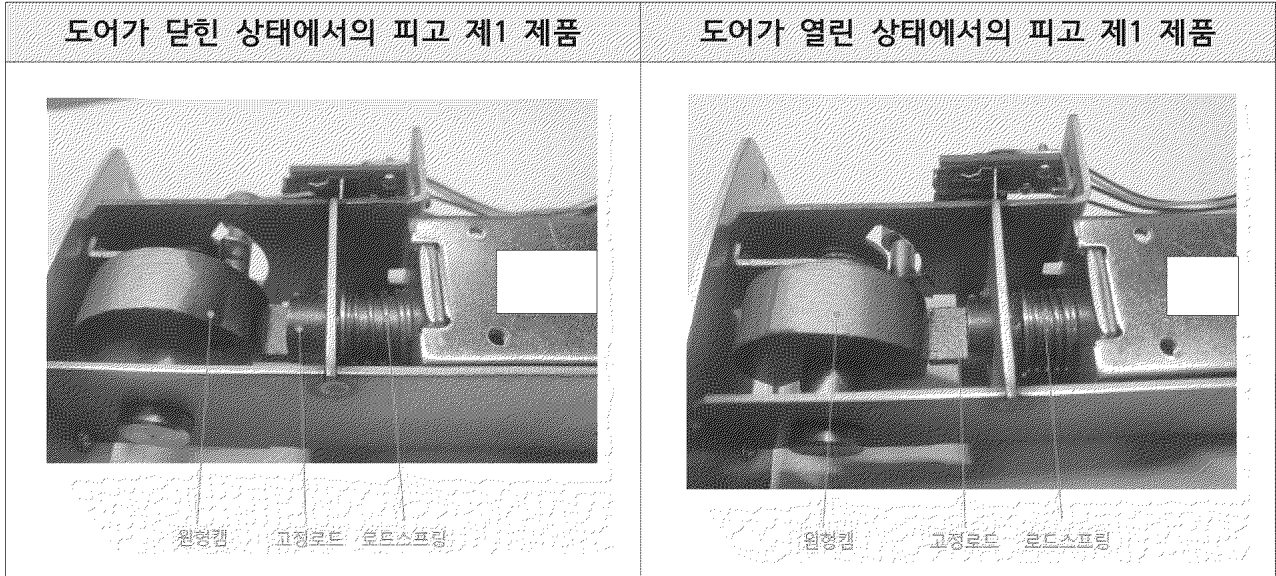
즉 '원형캠'이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기계적 잠금 또는 위치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기능상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나, 래치는 상대 부재와의 맞물림을 통해 잠금 상태 자체를 형성·해제하는 부재인 데 반하여, 원형캠은 회동 위치와 외주 형상에 따라 다른 부재와의 접촉 또는 삽입 관계를 형성하는 부재라는 점에서 그 구조와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2) 특히 피고 제1 제품의 경우, 도어의 닫힘 상태는 단순히 결쇠와 원형캠 결림홈 사이의 맞물림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고정로드가 원형캠 외주면에 형성된 고정홈에 삽입됨으로써 원형캠의 회동이 제한되는 구조에 의하여 유지된다. 즉, 피고 제1 제품에서는 도어의 결쇠를 상시 록킹시키는 기능이 하나의 래치 부재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캠의 결림홈, 원형캠의 고정홈, 그리고 이에 삽입되는 고정로드가 결합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어의 결쇠가 원형캠의 결림홈에 맞물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원형캠을 구성요소



1-2의 래치와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구성요소 1-2는 "복귀 스프링으로 탄성 지지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시키는 래치"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 제1 제품에서 도어의 걸쇠와 직접 맞물리는 부재는 걸림홈을 가진 원형캠이고, 원형캠의 잠금 상태는 다시 고정로드가 원형캠의 고정홈에 삽입됨으로써 제한되는 구조이다. 또한 피고 제1 제품에서는 원형캠의 회전축이 탄성 지지되고, 고정로드 역시 원형캠의 외주면에 접촉되도록 탄성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 제1 제품은 걸쇠와 맞물리는 부재, 그 부재의 회동을 제한하는 부재 및 각 탄성 지지 구조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작용하므로, 이를 곧바로 구성요소 1-2의 "복귀 스프링으로 탄성 지지되어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시키는 래치"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구성요소 1-2의 래치는 구성요소 1-3의 솔레노이드에 의하여 후진 이동되는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래치가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하고 있다가, 컨트롤박스의 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가 그 래치를 후진 이동 시킴으로써 록킹 상태를 해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반면, 피고 제1 제품에서는 솔



레노이드가 도어의 걸쇠와 맞물리는 원형캠 자체를 후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로드를 원형캠의 고정홈에서 인출되도록 후진 이동시키는 구조로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제1 제품에서는 도어의 걸쇠와 맞물리는 부재와 솔레노이드에 의하여 후진 이동되는 부재가 서로 구별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제1 제품의 원형캠 및 고정로드 조합은 구성요소 1-2의 래치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구성요소 1-3의 솔레노이드와의 작동 연계 구조 역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성요소 1-3 부분

이 부분 구성요소는 "상기 컨트롤박스의 신호로 여자되어 상기 래치를 후진 이동시키는 솔레노이드"이다. 이는 구성요소 1-2의 "래치"를 전제로 하여, 위 래치가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하고 있다가 컨트롤박스의 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가 여자³⁾ 되면 그 래치가 후진 이동함으로써 도어의 록킹 상태가 해제되는 구성을 의미한다. 즉, 구성요소 1-3에서 솔레노이드는 단순히 도어 잠금장치의 일부 부재를 이동시키는 장치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1-2에서 특정된 "래치"를 후진 이동시키는 구동수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제1 제품의 솔레노이드는 컨트롤박스의 신호로 여자되어 원형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로드가 원형캠의 고정홈에서 인출되도록 고정로드를 후진시키는 구성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구성요소 1-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1 제품의 원형캠 및 고정로드 조합을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래치"와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고정로드를 후진시키는 피고 제1 제품의 솔레노이드 역시 "상기 래치를 후진 이동시키

3) 솔레노이드가 여자(勵磁)된다는 것은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가 공급되어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솔레노이드"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래치가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하고, 솔레노이드가 바로 그 래치를 후진 이동시켜 록킹을 해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반면, 피고 제1 제품에서는 솔레노이드가 도어의 걸쇠와 맞물리는 원형캠을 후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형캠의 회동을 제한하고 있는 별도의 고정로드를 인출함으로써 원형캠의 회동 가능 상태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즉, 피고 제1 제품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작동으로 고정로드가 후진하더라도, 이는 원형캠의 고정홈으로부터 고정로드가 빠져 원형캠의 회동 제한이 해제되는 것일 뿐, 도어의 걸쇠와 맞물린 부재 자체가 곧바로 후진 이동하여 걸쇠와의 맞물림을 해제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제1 제품에서 도어의 개방은 고정로드의 후진, 원형캠의 회동 가능 상태 형성, 도어 걸쇠와 원형캠 사이의 상대적 회동관계라는 순차적·복합적 작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컨트롤박스의 신호에 의하여 솔레노이드가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솔레노이드가 이동시키는 대상 및 그 이동에 의하여 해제되는 잠금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구성요소 1-4 부분

이 부분 구성요소는 "도어 폐쇄 위치에서 상기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이다. 여기서 "상기 걸쇠"는 도어에 형성되어 구성요소 1-2의 래치에 의하여 상시 록킹되는 걸쇠를 의미하고,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란 도어가 폐쇄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위 걸쇠와의 간섭에 의하여 스위칭 작동되어 도어의 폐쇄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구성요소 1-2에서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시키는 래치를, 구성요소 1-3에서 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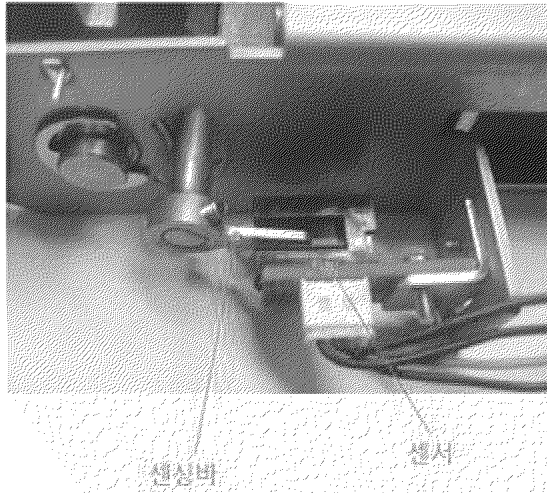
치를 후진 이동시키는 솔레노이드를, 구성요소 1-4에서 도어 폐쇄 위치에서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되는 센서를 각각 별개의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제1 제품은 원형캠의 일측면에 수직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센싱암, 그 센싱암의 단부에 형성되어 원형캠의 회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회동하는 센싱바 및 그 센싱바의 회동을 감지하여 도어의 닫힘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구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구성요소와 피고 제1 제품의 구성요소는 구성요소의 결합관계 및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성요소 1-4는 센서가 도어 폐쇄 위치에서 "걸쇠에 간섭되어" 스위칭 작동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문언상 센서의 작동 원인은 도어 걸쇠 자체와 센서 사이의 간섭관계에 있어야 하고, 도어의 폐쇄 여부는 걸쇠가 폐쇄 위치에 도달하여 센서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감지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 제1 제품에서는 센서가 도어의 걸쇠와 직접 간섭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캠에 형성된 센싱암 및 센싱바의 회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닫힘 여부를 감지한다. 즉, 피고 제1 제품의 센서는 도어 걸쇠의 위치나 걸쇠와의 간섭 자체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걸쇠와 맞물려 회동하는 원형캠의 상태, 나아가 그 원형캠에 부착 또는 형성된 별도의 센싱바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구조이다.



피고 제1 제품의 센서와 센싱바



(2) 구성요소 1-4에서는 도어의 걸쇠가 폐쇄 위치에서 센서와 간섭하여 센서를 스위칭 작동시키므로, 센서의 작동 대상과 도어의 잠금 대상이 모두 "걸쇠"를 중심으로 일치한다. 반면, 피고 제1 제품에서는 도어의 걸쇠가 원형캠의 걸림홈과 맞물리고, 센서는 그 원형캠의 센싱암 또는 센싱바의 회동을 감지한다. 따라서 센서가 작동하는 직접 대상은 걸쇠가 아니라 원형캠에 부가된 센싱 구조이고, 도어 걸쇠와 센서 사이에 청구항 문언이 예정한 간섭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구성요소 1-4의 "스위칭 작동"은 도어의 폐쇄 위치에서 상기 걸쇠와의 물리적 간섭에 의해 센서가 온·오프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 제1 제품의 센서는 원형캠의 회동에 따라 함께 회동하는 센싱바의 위치를 감지하여 도어 닫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이는 도어 걸쇠가 센서에 직접 간섭하여 스위칭 작동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어의 걸쇠와 원형캠의 맞물림 또는 상대적 운동이 원형캠의 회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원형캠에 형성된 센싱바의 위치를 센서가 감지하는 간접적·매개적 감지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구성요소 1-4의 "상기 걸쇠에



간섭되어"라는 문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검토 결과

가) 문언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 1-3, 1-4와 피고 제1 제품의 각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제1 제품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균등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 제1 제품의 원형캠, 고정로드, 솔레노이드 및 센싱바 등의 구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래치, 솔레노이드 및 센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주로 피고 제1 제품의 각 구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동일하거나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구성 대비에 집중되어 있을 뿐, 문언상 차이가 인정되는 각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침해 당시 쉽게 치환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1 제품은 도어의 걸쇠를 상시 록킹하는 래치 자체를 솔레노이드가 후진 이동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원형캠의 고정홈에 삽입된 고정로드를 솔레노이드가 후진시켜 원형캠의 회동 제한을 해제하는 구조이다. 또한 도어의 폐쇄 여부 감지도 걸쇠가 직접 센서에 간섭하여 스위칭 작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원형캠과 함께 회동하는 센싱바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부재의 명칭이나 형상·설계 변경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잠금 및 해제, 감지의 직접 대상과 작동 경로에 관한 실질적 차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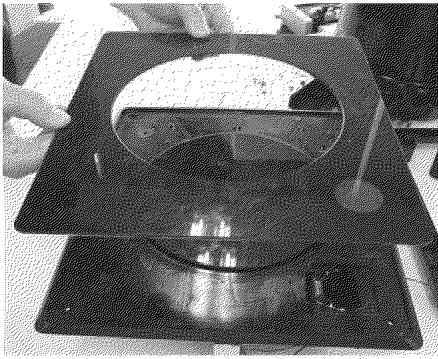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 제1 제품의 위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 내지 1-4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제1 제품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피고들의 자유실시기술 항변,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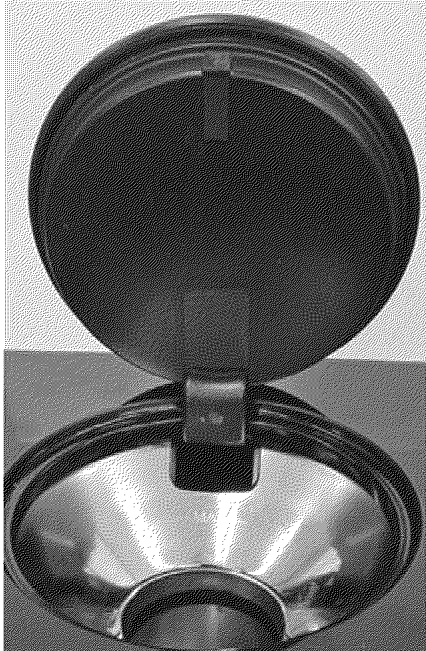

1) 구성요소의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피고 제2 제품
2-1	통상의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16)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베이스(2)와;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베이스
2-2	상기 상판 베이스(2)의 상측으로 배치되는 뚜껑틀(6)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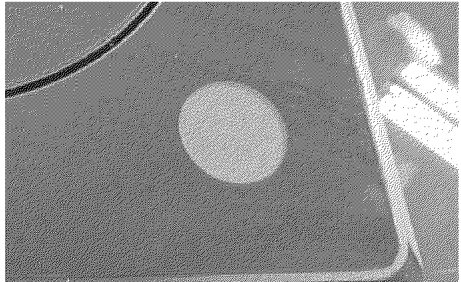


2-3	<p>상기 상판 베이스(2)의 하측으로 배치되고 외주에 흡기공(8)이 형성된 흡퍼(10)와;</p>	
2-4	<p>상기 흡기공(8)으로 설치되어서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40)와;</p>	
2-5	<p>상기 흡퍼(10)의 바깥 가장자리로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14)와;</p>	



2-6	<p>상기 뚜껑틀(6)에 개폐 가능하게 배치되고 상기 장착 홈(16)에 끼워지는 힌지부(18) 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32)이 각각 외주 면에 형성되는 뚜껑(4)과;</p>	
2-7	<p>상기 힌지부(18)의 양측으로 연결 고정되 는 1쌍의 복좌 축(20)과;</p>	<p>덮개의 일측이 그 종양에 결합 고정되는 단 일의 힌지축</p>
2-8	<p>상기 복좌 축(20)을 축 지지하는 하우징 (26)과;</p>	<p>축 지지 하우징</p>
2-9	<p>상기 하우징(26)의 내부에서 출력단이 상 기 복좌 축(20)으로 연결되고 반대쪽 고정 단은 하우징(26)에 연결 고정되는 나선형 스프링(28)과;</p>	<p>나선 스프링</p>
2-10	<p>상기 상판 베이스(2)의 외주 하측으로 배 치되어서 상기 뚜껑(4)이 닫히면 계지홈 (32)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시정축(30)과;</p>	



2-11	상기 뚜껑틀(6)의 상면으로 배치되어서 시정 홀(30)을 연동 해제시키는 해제버튼(34)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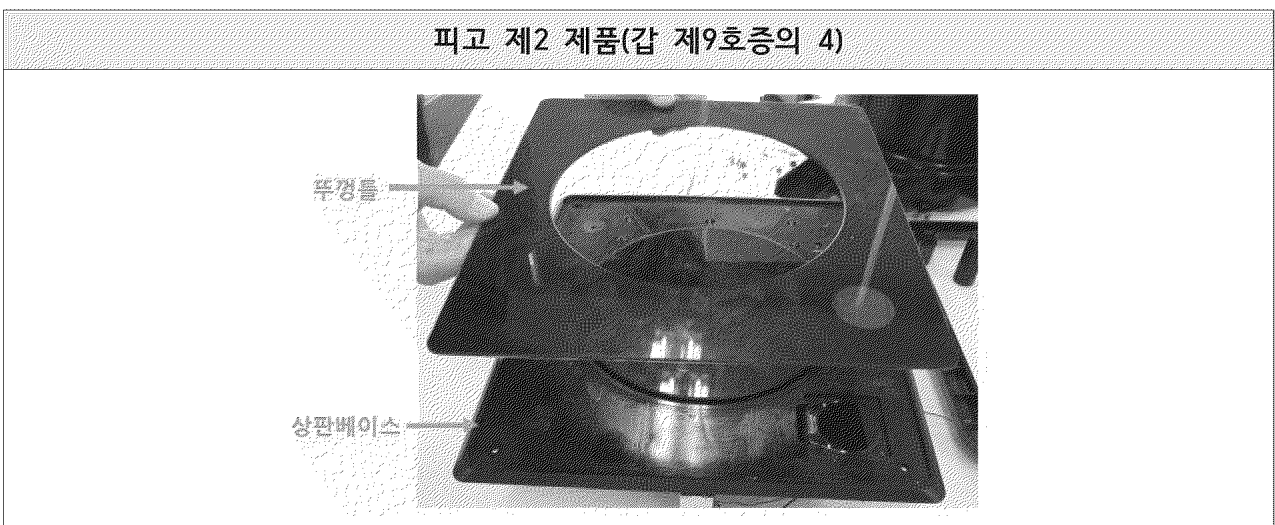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2-1, 2-8, 2-9 부분

이 부분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 제2 제품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2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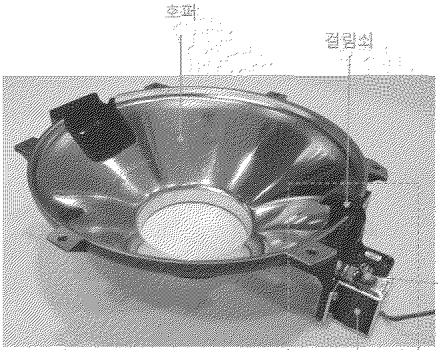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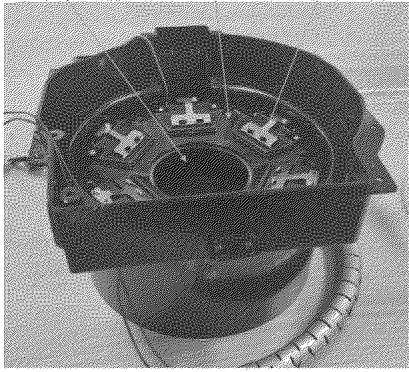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2는 "상기 상판 베이스의 상측으로 배치되는 뚜껑틀"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에는 상판 베이스의 상측에서 뚜껑과 결합되어 이를 배치·지지하는 틀 형상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2-2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성요소 2-3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3은 "상기 상판 베이스의 하측으로 배치되고 외주에 흡기공이 형성된 호퍼"이다. 이는 구성요소 2-1의 상판 베이스 하측에 음식물 쓰레기 등이 투입·이송되는 호퍼가 배치되고, 그 호퍼의 외주에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흡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 제2 제품은 아래와 같이 상판 베이스 하측에 호퍼를 구비하고 있으나, 흡기공이 호퍼 외주에 직접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공기유입 부재나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2-3과 차이가 있다.

피고 제2 제품의 호퍼	피고 제2 제품의 공기유입관과 플랜지
	

라) 구성요소 2-4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4는 "상기 흡기공으로 설치되어서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이다. 이는 앞서 본 구성요소 2-3의 "호퍼 외주에 형성된 흡기공"을 전제로 하여, 그 흡기공에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가 설치되는 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은 상판 베이스 하측에 호퍼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흡기공이 호퍼 외주에 직접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기유입 플랜지 또는 이에 대응하는 부재에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공기



유입 플랜지 상면에 배치된 판형 커버가 체크밸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흡퍼 외주에 형성된 흡기공에 설치된 체크밸브"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4와 피고 제2 제품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마) 구성요소 2-5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5는 "상기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로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이다. 이는 구성요소 2-3의 흡퍼를 전제로 하여, 그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 부분에 한 쌍을 이루는 흡음 케이스가 부착되는 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은 외부 공기 유입 구조가 흡퍼 외주에 직접 형성된 흡기공이 아니라, 별도의 공기유입 플랜지 또는 그에 대응하는 부재를 통하여 형성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피고 제2 제품의 소음 저감 구조 역시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에 부착된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라기보다는 위 공기유입 플랜지 또는 그 주변 구조와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결국 피고 제2 제품은 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기능상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구조가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에 부착된" 흡음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5와 피고 제2 제품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바) 구성요소 2-6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6은 "상기 뚜껑틀에 개폐 가능하게 배치되고 상기 장착 홈에 끼워지는 힌지부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이 각각 외주 면에 형성되는 뚜껑"이다. 이는 뚜껑이 뚜껑틀에 개폐 가능하게 배치되고, 그 외주면 일측에는 상판 베이스의 장착 홈에 끼워지는 힌지부가 형성되며, 그 반대쪽에는 시정 홀과 결합되는 계지홈이 형성되는 구성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서 계지홈은 구성요소 2-10의 시정 홈이 끼워져 걸리는 상대 구조로서, 뚜껑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잠금 결합부이다. 그런데 피고 제2 제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뚜껑 또는 덮개 측에 홈 형태의 계지홈이 아니라 걸쇠 또는 돌출형 결합부를 구비하고, 그 상대측의 걸림쇠 또는 걸림구조가 이에 맞물리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는 잠금 결합을 위한 요홈부와 돌출부 또는 걸림부의 상대적 배치가 청구항이 예정한 계지홈과 시정 홈의 결합관계와 반대되거나 적어도 서로 다른 구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제2 제품이 "힌지부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이 각각 외주 면에 형성되는 뚜껑"을 그대로 구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6과 피고 제2 제품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도1 중 뚜껑 부분	제2 피고 제품의 뚜껑 부분

사) 구성요소 2-7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7은 "상기 힌지부의 양측으로 연결 고정되는 1쌍의 복좌 축"이다. 이는 구성요소 2-6의 뚜껑에 형성된 힌지부를 전제로 하여, 그 힌지부 양측에 서로 대응하는 한 쌍의 복좌 축이 연결·고정되는 구성이므로, 이때의 "1쌍"은 서로 대응하는 두 개의 축이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 제2 제품은 단일의 힌지축이 장착 홈 내측의 지지부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그 중앙부에 뚜껑이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구성요소 2-7과는 축의 개수,



배치 및 결합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아) 구성요소 2-10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10은 "상기 상판 베이스의 외주 하측으로 배치되어서 상기 뚜껑이 닫히면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시정 홈"이다. 이는 구성요소 2-6의 뚜껑에 형성된 계지홈을 전제로 하여, 상판 베이스의 외주 하측에 배치된 시정 홈이 뚜껑이 닫힐 때 위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림으로써 뚜껑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즉, 구성요소 2-10은 단순히 뚜껑을 잠그는 일반적인 걸림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상판 베이스의 외주 하측"으로, 그 작동 상대를 "뚜껑의 계지홈"으로, 그 작동 방식을 "끼워져 걸어주는" 것으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구성요소 2-6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은 뚜껑 또는 덮개 측에 계지홈이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덮개 측에 걸쇠 또는 돌출형 결합부가 형성되고 상대측의 걸림쇠가 이에 맞물리는 구조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피고 제2 제품의 걸림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시정 홈과 같이 뚜껑의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제2 제품의 걸림쇠가 호퍼의 일단 외측에 회동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위치 역시 구성요소 2-10의 "상판 베이스의 외주 하측"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10과 피고 제2 제품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피고 제2 제품의 덮개가 열린 모습



자) 구성요소 2-11 부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11은 "상기 뚜껑틀의 상면으로 배치되어서 시정 혹은 연동 해제시키는 해제버튼"이다. 이는 구성요소 2-2의 뚜껑틀 및 구성요소 2-10의 시정 혹은 전제로 하여, 뚜껑틀의 상면에 배치된 해제버튼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시정 혹은 연동 해제시킴으로써 뚜껑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여기서 "해제버튼"은 사용자가 조작하여 뚜껑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입력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항 문언 자체가 이를 반드시 기계식 버튼 또는 수동식 작동 구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제2 제품의 터치버튼이 상면에 배치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신호를 입력받고, 그 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가 작동하여 결림쇠 또는 래치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구조라면, 구성요소 2-11의 해제버튼과 일응 대응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은 구성



요소 2-10의 "상판 베이스의 외주 하측으로 배치되어 뚜껍의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시정 홈"을 그대로 구비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호퍼의 일단 외측에 회동 가능하게 배치되어 덮개 측 걸쇠와 맞물리는 걸림쇠 및 이를 작동시키는 래치·솔레노이드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제2 제품의 터치버튼이 잠금 해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대상 및 해제 메커니즘의 결합관계가 구성요소 2-11의 "시정 홈을 연동 해제시키는 해제버튼"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토 결과

가) 문언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3 내지 2-7, 2-10, 2-11과 피고 제2 제품의 각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균등침해 여부

(1)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에 관한 발명으로서, 주방에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뚜껍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에는 외부 공기가 투입구 내부로 도입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진공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상판 베이스, 뚜껍틀, 호퍼, 흡기공과 체크밸브, 흡음 케이스, 뚜껍과 힌지부, 복좌 축과 나선형 스프링, 시정 홈 및 해제버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3



내지 2-7, 2-10 및 2-11을 문언 그대로 구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흡기공 및 체크밸브의 설치 위치, 흡음 구조의 배치, 계지흡과 걸림부의 상대적 형상, 힌지축의 개수와 결합방식, 해제버튼의 작동 방식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나 과제해결원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성요소 2-3, 2-4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흡퍼의 외주에 흡기공을 형성하고, 그 흡기공에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흡기공이 흡퍼 외주에 직접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공기유입 플랜지 또는 공기이동공 측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 부근의 판형 커버가 체크밸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2 제품 역시 부압이 형성될 때 외부 공기의 유입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악취 또는 내부 공기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는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피고 제2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여 흡기공의 고장 가능성을 낮추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외부 공기 도입, 악취 차단, 소음 저감, 뚜껑의 개폐 및 잠금·해제라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작용효과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체적 부품의 위치나 구조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차이가 과제해결원리 또는 작용효과와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성요소 2-5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를 포함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흡퍼의 바깥 가장자리가 아니라 공기 유입플랜지 하측 또는 연결관 주변에 흡음 또는 소음 저감 구조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제2 제품의 구조 역시 진공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흡음 기능을 수행하는 부재의 구체적 배치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구성요소 2-6, 2-10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뚜껑의 힌지부 대칭방향에 계지홈을 형성하고, 상판 베이스 외주 하측의 시정 홈이 위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림으로써 뚜껑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뚜껑 측에 계지홈이 아니라 걸쇠 또는 돌출형 결합부가 형성되고, 상대측의 걸림쇠가 이에 맞물리는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양 구성은 모두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뚜껑 측 결합부와 본체 측 잠금부재가 서로 걸림 결합하여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그 걸림 결합이 해제되어 뚜껑이 개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계지홈과 시정 홈의 형상 또는 요철 구조의 상대적 배치에 문언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제 해결원리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구성요소 2-7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힌지부 양측에 연결 고정되는 1쌍의 복좌 축을 두고, 이를 하우징 및 나선형 스프링과 결합하여 뚜껑의 개폐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1쌍의 복좌 축이 아니라 단일 힌지축 또는 이에 대응하는 축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뚜껑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고 탄성부재와 결합하여 뚜껑의 개폐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 즉, 힌지축을 양측의 한 쌍으로 구성할 것인지, 단일 축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뚜껑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고 탄성부재와 결합하여 개폐 동작을 구현한다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설계 방식의 차이로 볼 여지가 크다.

(마) 구성요소 2-1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뚜껑틀 상면에 배치된 해제버튼이 시정 혹은 연동 해제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터치버튼 등의 입력수단, 솔레노이드, 래치 또는 걸림쇠가 결합하여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제버튼"이 반드시 순수한 기계식 버튼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잠금부재의 걸림 상태를 해제한다는 기능 면에서는 피고 제2 제품의 터치버튼 및 솔레노이드 구동 구조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해제버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

(2) 치환의 용이성

또한 위와 같은 차이들은 흡기공 및 체크밸브의 설치 위치, 흡음 구조의 배치, 계지홈과 걸림부의 상대적 형상 및 배치, 힌지축의 개수와 결합방식, 해제버튼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에서 외부 공기 유입, 소음 저감, 뚜껑의 개폐, 단힘 상태의 유지 및 해제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구성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부 구성의 구체적인 위치, 형상, 결합방식 또는 작동방식은 제품의 크기와 형상, 설치 공간, 조립 편의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내구성, 청결성, 제조비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계사항의



범위에 속한다.

특히 흡기공과 체크밸브를 흡퍼 외주에 직접 형성할 것인지 또는 그와 연결된 공기유입부 주변에 배치할 것인지, 흡음부재를 흡퍼 바깥 가장자리에 부착할 것인지 또는 공기유입플랜지 하측이나 연결관 주변에 배치할 것인지, 뚜껑과 본체 측 잠금부재의 요철 관계를 어느 쪽에 둘 것인지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배치의 문제로 보인다. 나아가 힌지축을 1쌍의 복좌 축으로 구성할 것인지 또는 단일 힌지축으로 구성할 것인지,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입력수단과 잠금부재의 연동 방식을 어떠한 구조로 구현할 것인지 역시 뚜껑의 개폐와 잠금 해제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었다거나 그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작용효과가 상실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제2 제품의 위 각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침해 당시 별다른 기술적 곤란 없이 쉽게 치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서 사용자가 해제버튼을 누르면 시정 흡이 계지흡으로부터 해방되어 뚜껑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해제버튼의 구체적 구성, 해제버튼과 시정 흡의 유기적 결합관계, 해제버튼을 누를 때의 구체적 작동원리가 충분히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뚜껑의 힌지부 및 계지흡, 시정 흡, 해제버튼에 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즉, 뚜껑은 힌지부와 계지흡을 구비하고,



시정 혹은 뚜껑의 계지힘으로 끼워져 뚜껑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며, 뚜껑틀 상면의 해제버튼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시정 혹은 해제하여 뚜껑이 열리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시정 혹은 뚜껑의 계지힘에 걸려 뚜껑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해제버튼을 조작하면 시정 혹은 이동하여 위 걸림 상태가 해제되며, 그 결과 뚜껑이 개방되는 기본적인 작동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제버튼이 시정 혹은 연동 해제시키는 구체적인 기계적 연결방식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위 구성요소들의 배치와 기능 및 작동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설계 가능한 여러 방안 중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 제2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문언상 그대로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차이점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통상의 기술자가 침해



당시 쉽게 치환할 수 있었던 정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제2 제품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균등침해한다.

4. 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피고 제2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자인 원고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제2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본점, 지점, 판매점, 대리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제2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그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가 피고 제2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추정된다(특허법 제130조 참조). 또한 원고는 쓰레기 수거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피고 B와 경업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⁴⁾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4) 손해의 발생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이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위와 같은 특허권 침해 행위를 결정·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상법상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제8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피고 제2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기간을 ① 2014. 8. 28.부터 2019. 7. 8.까지(이하 '제1구간'이라 한다), ② 2019. 7. 9.부터 2024. 8. 20.까지(이하 '제2구간'이라 한다), ③ 2024. 8. 21.부터 현재까지(이하 '제3구간'이라 한다)로 구분한 다음, 제1구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322,748,1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10. 2.까지의 지연손해금 130,558,275원의 합계 453,306,467원을, 제2구간에 관하여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4,121,646,576원에 구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8항에 따른 3배 증액배상을 적용한 12,364,939,7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453,164,397원의 합계 12,818,104,125원을, 제3구간에 관하여는 손해액 8,097,535,904원에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5배 증액배상을 적용한 40,487,679,520원을 각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금액을 합산한 손해배상금 합계 53,759,090,112원 중 일부로서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⁵⁾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등 참조).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매출액)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변동비)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피고 제2 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2 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그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고 제2 제품의 구체적인 판매

5)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과 그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다만, 원고는 2026. 3. 2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일부 청구액을 50,000,000원에서 900,000,000원으로 확장하였고,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침해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주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6. 4.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서 위 900,000,000원의 일부 청구액을 유지한 채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손해액에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주장하였을 뿐, 위 900,000,000원 중 지연손해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비율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청구취지 변경 경위,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 및 일부 청구액이 유지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위 900,000,000원의 일부청구 대상에 포함하여 별도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의 근거를 보충하면서 그 전체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관련 900,000,000원의 일부청구를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 중 일부를 구하는 취지로 선택하여 판단한다.



수량 및 판매단가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 제2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제2 제품의 판매수량을 산정한 주된 자료는 피고 B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실적이다(갑 제23호증 참조). 위 사업실적은 피고들이 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를 납품·설치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각 사업대상 아파트 또는 현장의 전체 세대 중 실제로 어느 세대에 피고 제2 제품이 공급되었는지, 각 현장별로 피고 제2 제품이 몇 개 공급되었는지, 공급된 제품이 모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사양에 해당하는지, 일부 무상공급·교체공급·반품 또는 중복 산정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홈페이지 실적만으로는 피고 제2 제품의 실제 판매수량이 원고 주장과 같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 제2 제품의 판매단가 및 이익액에 관하여도, 각 아파트 또는 현장별 계약 조건, 납품 범위, 설치·시공 조건,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조건, 운송비·설치비 부담 주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피고 제2 제품이 전체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또는 관련 공사계약의 일부로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피고 제2 제품만의 개별 판매단가 및 그 생산·판매에 추가로 투입된 변동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현장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자료, 납품내역, 설치·운송·하자보수 비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가 별건 소송에서 피고 제2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200,216원으로 산정·주장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위 금액을 이 사건에서도 피고 제2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갑 제26, 30호증 각 참조). 그러나 별건 소송에서의 위 진술이 이 사건에서 곧바로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산정의 전제가 된 개별 공사현장의 상황, 납품 범위와 기간 및 조건, 판매단가, 공급비용 및 산정방식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피고 제2 제품의 전체 판매기간 및 각 현장별 거래조건과 일률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제2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200,216원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제2 제품의 판매수량, 판매단가 및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피고 제2 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하여 얻은 한계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9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피고 C의 원고 근무 이력, 2015년경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을 들어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존재 또는 원고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피고 제2 제품의 실시가 이 사건 제2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여기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피고 제2 제품의 구성요소 간 대응관계 및 균등침해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구 특허법 내지 현행 특허법 제 128조 제8항에 따른 증액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가 피고 제2 제품의 판매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제출한 피고 B의 사업실적은 피고 B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한 자료로서, 피고 B가 각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실적의 각 현장별 세대 수를 기준으로 피고 제2 제품의 판매수량을 합계 62,642개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수량 중 순번 30 내지 52 기재 현장들은 준공 또는 입주 예정시기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6. 4. 23. 이후이거나 미정·미착공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제2 제품이 실제로 공급·양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⁶⁾

6)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준공 또는 입주가 예정된 현장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래에 피고 제2 제품이 공급·양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장래이행의 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장래의 침해행위는 금지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방지될 수 있고, 장래 실제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에 공급·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까지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지는 아니한다.



다) 다만, 위 순번 30 내지 52 기재 현장들의 세대 수 합계는 30,183개이고,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총 수량인 62,642개에서 제외하더라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공급·양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피고 제2 제품의 수량은 32,459개에 이른다. 또한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건 소송에서 일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및 부품 원가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 제2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200,216원으로 산정·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이 사건에서 피고 제2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피고 제2 제품의 수익구조에 관한 선행 진술이라는 점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변론종결일 이전에 공급·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32,459개에 피고들이 별건 소송에서 언급한 단위수량당 이익액 200,216원을 곱하여 피고 제2 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한 이익액을 추산해 보면, 이는 6,498,811,144원에 이른다.

라) 피고들은 피고 제2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한 당사자로서, 피고 제2 제품의 실제 공급수량, 현장별 납품 여부, 판매단가, 계약금액 중 피고 제2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생산·판매에 소요된 원가 및 변동비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판매수량 및 이익액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실제 공급수량이 원고의 주장보다 적다거나 원고가 특정한 현장 중 피고 제2 제품이 공급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거나, 피고 제2 제품의 실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원고 주장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반증을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 제2 제품의 판매에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 외에



도 피고들의 시공능력, 영업활동, 현장별 계약조건, 유지관리능력 및 제품의 나머지 구성 등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추산 이익액이 6,498,811,144원에 이르는 점, 피고 제2 제품이 공급·양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현장의 수와 세대 수가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 B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경업관계에 있는 점, 피고들이 관련 거래자료와 원가자료를 보유하고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900,000,000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⁷⁾부터, 나머지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 모두 위 금액에 관한 청구가 확장된 2026. 3. 2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3. 24.부터⁸⁾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인 202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며

7) 피고 C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24. 10. 3.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8) 위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3. 2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가 확장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위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6

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



[별지]

제1 목록

1. 피고 제1 실시제품의 명칭

제품(각종 투입 방식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의 투입구 도
어 장치

2. 피고 제1 실시제품의 사진(예시)

--



제2 목록

1. 피고 제2 실시제품의 명칭

[] 제품(세대 내 투입 방식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의 []

2. 피고 제2 실시제품의 사진(예시)

끝